

【 1 】 제24회의회(임시회)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4. 1. 17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24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- 회기 : 94. 1. 20 ~ 1. 22 (3일간)

【 2 】 1994년도군정보고의건

제출년월일 : 1994. 1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1994년도 군정업무의 추진방향과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함으로서 주민편의 행정과 신뢰 행정을 구현코자 함.

주요골자

1. 시정연설
2. 19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

【 3 】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1. 17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개정이유

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대통령령 제14074호, 1993. 12. 31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정비코자 함.

주요골자

1. 장려수당 신설 (안 제4조)

-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(월 100,000원)
-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(월 100,000원)
- 하수·폐수 및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(월 100,000원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 (장려수당)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·하수·폐수·쓰레기업무,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(별표 4)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

(별표 4)

지 금 대 상	지 금 액	비 고
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남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 원	
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 원	
하수·폐수 및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 원	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3조 (생략) (신설)	제1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(장려수당)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</u> <u>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·하수</u> <u>폐수·쓰레기 업무,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</u> <u>남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</u> <u>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</u> <u>장려수당의 지급액은 (별표4)와 같다.</u>

【 4 】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1. 17.